

동해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-02호

「유·도선 및 유·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」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월 21일

동해해양경찰서장

유·도선 및 유·도선장

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

1. 제정사유

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·도선 및 유·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유·도선 및 유·도선장에서 게시하여야 할 사항과 게시물의 규격·재질·색상, 게시장소 기준 명시

※ 승선료, 승선 정원, 영업구역 및 시간, 승객 준수사항, 구명조끼 착용법,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등

나. 「선박구명설비기준」 제80조(구명조끼) 개정에 따른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의무 신설로 구명조끼 구분 보관(성인용·어린이용·유아용) 및 구명조끼 보관함에 구비현황과 종류별 착용범위 게시하도록 명시

다.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재검토 기한 설정

※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·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(해상교통계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 정(안)	수 정(안)	사 유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

1) 우편 또는 Fax 등

- 우편 : (우)25730, 강원도 동해시 임항로29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
- 전화 : 033) 741-2349 / Fax : 033) 741-2949
- 전자우편(메일) : qudwn1328@korea.kr

2)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(순경 김병주, ☎ 033-741-234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세부내용은 동해해양경찰서 홈페이지(<http://www.kcg.go.kr/donghaecgs/main.do>) 알림사항 > 고시·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